

심의건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제 38 호	제 17 차	1991. 8. 1.	중재 김 건

의 안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망 한국은행법 제7조

제의취지 최근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5개 신도시 주택건설계획 순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화중립적 방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권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붙임)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안)]

명	개	비 고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 (여신의 금지) 금융기관이 <별표>의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p>1 ~ 2. (생략)</p> <p>3. 정부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 (여신의 금지)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p>	
<p>제3조의2 ~ 제12조 (생략)</p> <p>(신설)</p>	<p>제3조의2 ~ 제12조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이 규정은 1991. 8. 1부터 시행한다.</p>	<p>○ 금융기관 지급보증대상 주택상환사채의 범위확대</p>
<p><별표> (생략)</p>	<p><별표> (현행과 같음)</p>	<p>○ 시행일자 명시</p>